

## 한국전력공사, 미국 에디슨대상 수상으로 경영성과 국제적 인정

- 세계 최초 345kV 해상송전선로 및 배전전압 220V 승압 완료 등 평가 -
  - 국제적 위상 제고로 해외 전력사업 진출에 큰 도움 기대
-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는 6월 21일 04:30 (미국 현지시각



6월20일 15:30) 미국 워싱턴DC의 Hilton Washington 호텔에서 미국 에디슨전기협회(EEI) Michael Morris 회장으로부터 Edison Award(에디슨대상)을 수상했다..

에디슨대상은 1922년 시상을 시작으로 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력회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세계 전력산업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경영혁신 성과,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력 등 전력산업 발전 기여도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력산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있다.

한전의 시상내용은 세계 최초로 89기의 해상철탑 시공 신공법 개발 및 고강도 알루미늄 전선 등 신기술 적용과 환경친화적 공사시행으로 345kV 영흥 해상송전선로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전력수급난 해소 (연간 3,700억 절감)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추진업무를 못내고 있는 220V 배전전압 승압사업을 30여년에 걸쳐 1,700만호에 대해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전력손실 감소효과 및 사회경제적 기여(송배전손실을 4.46% 달성, 연간 1,700억 절감)한데 있다.

한전은 국제적 권위의 에디슨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능력과 기술력 등 경영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년 도	회 사 명	상 업 적
2005	ATCO Elctric (캐)	열악한 산악지형의 350km 송전선로 건설을 환경친화적 최신품법과 한정된 예산으로 10개월만에 완공
2004	Scottish Power (영)	재무부문의 탁월한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경영 실적
2003	중부전력 (일)	온라인계통안정화장치 개발·설치를 통한 계통신뢰도 향상
2002	-	수상자 미선정
2001	관서전력 (일)	세계적인 고압직류송전선로 설치방법 개선으로 계통신뢰도 및 성능 향상
2000	Union Fenosa (스)	성공적인 사업전략 수행, 해외사업 증대, 주주가치 향상
1998	동경전력 (일)	ABWR 설계 및 건설 *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1997	한국전력	경영혁신 노력, 원자력 분야 기술자립 노력 및 안전운영, 중소기업 지원 업적

계기가 되어 한전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해외 전력사업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에디슨전기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EEI)

- 1933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전기협회
- 미국 186개 회원사, 타국 36개국 66개 전력회사 및 70여개의 준회원사
- 미국 전체 발전량의 약 60% 생산, 미국 전 국민의 71%에게 전력 공급
- 에디슨대상(Edison Award)은 예심과 본선, 독립심사위원회 등 까다로운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되며, 국제회원사는 1994년부터 시상함

## 한국전력공사, 미얀마 전력계통분야 기술용역사업 계약 체결

- '송전격상 설계사업'에 이어, 미얀마 전력시장에서 확고한 지위 확보-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는 6월 19일 서울 연건동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과 13억 1천만 원 규모의 "미얀마 전력계통 운영 및 보호시스템 구축"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다음달인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간에 걸쳐 미얀마의 전력망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선진 운영기술의 전수와 현지 기술인력 연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한전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전력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인 미얀마 전력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여 송전선로 건설 등 향후 후속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밝게 하였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2년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과 올해 초 '500kV 송전격상 설계사업' 용역을 완수하여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확대

- 문화·컨텐츠, 바이오, 로봇 관련 기술 지원 가능성 높아 -

산업자원부는 6월 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고시하였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산업기술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이 총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되어 그만큼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부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미세기술(M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우선 포함되었고, 특히, 문화·컨텐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T :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4개 신기술·제품 추가

\* ET : 대기오염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에너지 기술·제품 등 신설

\* ICT :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 지정

\* 디지털스토리텔링, 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감성 통합·재생 기술을 포함

이밖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제품도 신규로 지정된다.

또한, 용도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제품 내용이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 2-6 산업 및 농업용 로봇 → 2-6 지능형 로봇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지능형 로봇부품 등 상세화하고 서비스업 발전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 관련 신규 수요가 반영되었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분명한 기술용어 등은 수정되었다.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시행('06.1.1)에 따라 종합물류업자 신규 지정 등 물류서비스 정책 수요 반영하여,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시스템 재조정 : 상용화된 자동전화면접시스템을 삭제하고,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센터관리시스템을 추가 그 밖에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상용화된 기술은 삭제하거나 기술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삭제된 기술 : 벽걸이 TV, 자동인터뷰시스템, 자동전화면접시스템 등으로 기준 엄격화된 기술 : MLB 회로폭 0.1mm 이하 → MLB 회로폭 0.05mm이하, 대형크루즈선(총톤수 5,000톤 이상 → 총톤수 20,000톤 이상)

## 『집단에너지사업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 확대 및 규제완화 -

- ◇ 사업자간 잉여열(熱)의 상호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 시 민간참여의 활성화
- ◇ 에너지공급자간 분쟁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

거 마련

-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신규열원 설치 허가의 명확화
- ◇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 관련 규제완화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잉여열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시 민간참여가 확대되며, 서류간소화, 처리시간 단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이 개방('99년)된 이후,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 확대 및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상호 공생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법령(안)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집단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요인의 합리적 해소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집단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확대됨으로서 고유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집단에너지 열거래 기반 마련(법안 제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열배관을 인근 사업자간에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열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다.
- ②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시 민간참여 활성화(법안 제5조)
  -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하여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및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

장하고, 사업자 및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등이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역에 대한 공급을 명문화(법안 제5조의2)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서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명문화한다.
- \* 공급대상지역의 지역에서의 공급 절차 등 구체적으로 필요 사항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규칙에서 후속 규정할 예정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안 제47조의2)

-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 산자부 장관은 분쟁 발생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통보, 분쟁당사자의 의결사항 이행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열원시설 명확화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 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시행령안 제8조 제2항)한다.
- \* 공급대상지역 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생산시설 및 사업자의 공급 부족 시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 등은 허가 예외
-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허가기준 명확화,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 등을 규정(시행규칙안 제5조)한다.

⑥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 관련 서류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안 별표3 제10호)한다.
-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선(안 별지 제16호)한다.

⑦ 사업허가(신고) 경합시 선정방법 명확화(시행규칙안 제7조)

- 현재 신규 사업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한 지역에 대해 신규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이 다양한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동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사업기간 논란을 해소한다.

⑧ 기타

- 현행 공급규정에 포괄 위임된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법령상 명문화(법안 제18조)한다.
-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과 관련하여, 공급과 관련한 위해발생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법안 제24조)한다.

□ 상기 개정법령(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3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발효될 예정이다.